내 삶을 바꾸는
규제혁신

관세청

2024 달라지는 관세행정

01 납세자 본인의 과세정보 전송 요구권 마련

종 전

□ 〈신 설〉

□ 〈신 설〉

□ 〈신 설〉

□ 〈신 설〉

달라지는 내용

□ **납세자 본인에 관한 과세정보 전송요구권 신설**

- 관세법 제116조에 따른 과세정보를 관세사 등*에게 전송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마련

  * 본인, 관세사, 세무사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기통신사업자

□ **납세자 과세정보에 대한 안전성 조치 확보**

- 과세정보 전송요청 철회권과 관세청의 과세정보 전송 거절 근거 마련
- 안전성 확보를 위해 본인의 과세정보 등을 명확히 특정하는 규정 신설

□ **전송업무 대행기관 근거 신설**

- 대행기관으로 지정된 자는 과세정보 유출 방지를 위한 시스템 구축 의무 부과

□ **과세정보 전송 수수료 신설**

- 과세정보 요구 시 수수료 부과

기대효과 민간 기업의 무역데이터 활용률을 제고하여 마이데이터 산업 활성화와 기업경쟁력 강화에 기여

시 행 일 ’24. 7. 1. 시행 예정(「관세법」 제116조의6 신설)

02 선상 견본품 반출 채취 근거 마련

종 전

□ **견본품 반출·채취 대상(제161조)**
- 보세구역에 반입된 물품의 일부를 견본품으로 채취·반출 가능
- 〈신설〉

달라지는 내용

□ **대상 확대**
- 〈현행과 같음〉
- 국제무역선에서 외국물품의 일부를 견본품으로 채취·반출 가능

기대효과 원유·곡물 등을 선박에서 하역하기 전에 견본품을 확보하는 절차를 마련하여 수입업계 애로 해소 및 법적 안전성 확보

시 행 일 '24. 1. 1. 시행(「관세법」 제161조 제1항 및 제4항 개정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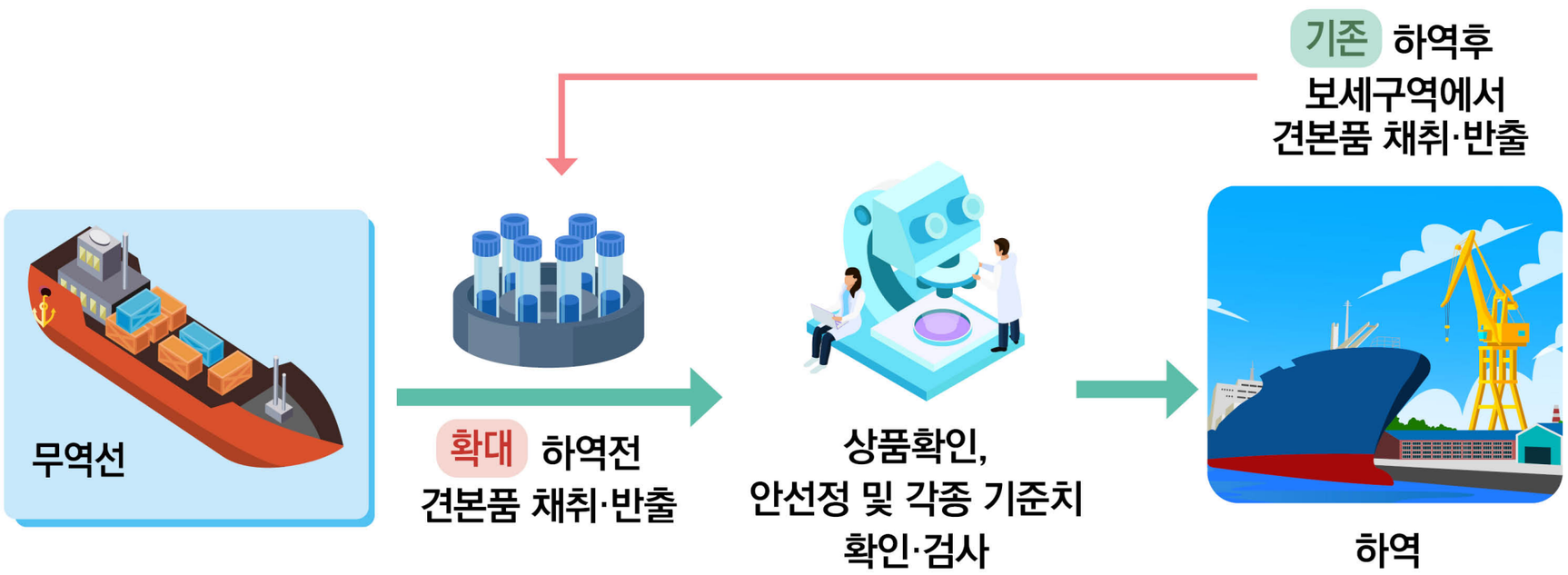

※ 하역전 수입품 견본품 확인으로 각종 분쟁 및 법적 안전성 확보

03 국제항 내 국제무역선에 의한 보세운송

종 전

□ 〈신 설〉

달라지는 내용

□ **국제항 내 국제무역선에 의한 보세운송 절차 마련** (제220조의2)

- 환적, 수출신고수리 물품에 한해 국제항 내에서 보세운송 허용
- 보세운송 신고 및 절차는 기존 보세운송 제도 준용

기대효과 국제항 안에서 국제무역선을 이용한 환적물품 등의 보세운송을 허용하여 환적물품 유치지원 및 수출경쟁력 강화

시 행 일 '24. 1. 1. 시행(「관세법」 제220조의2 신설)
※ 시행규칙 시행일 이후 보세운송 신고분부터 적용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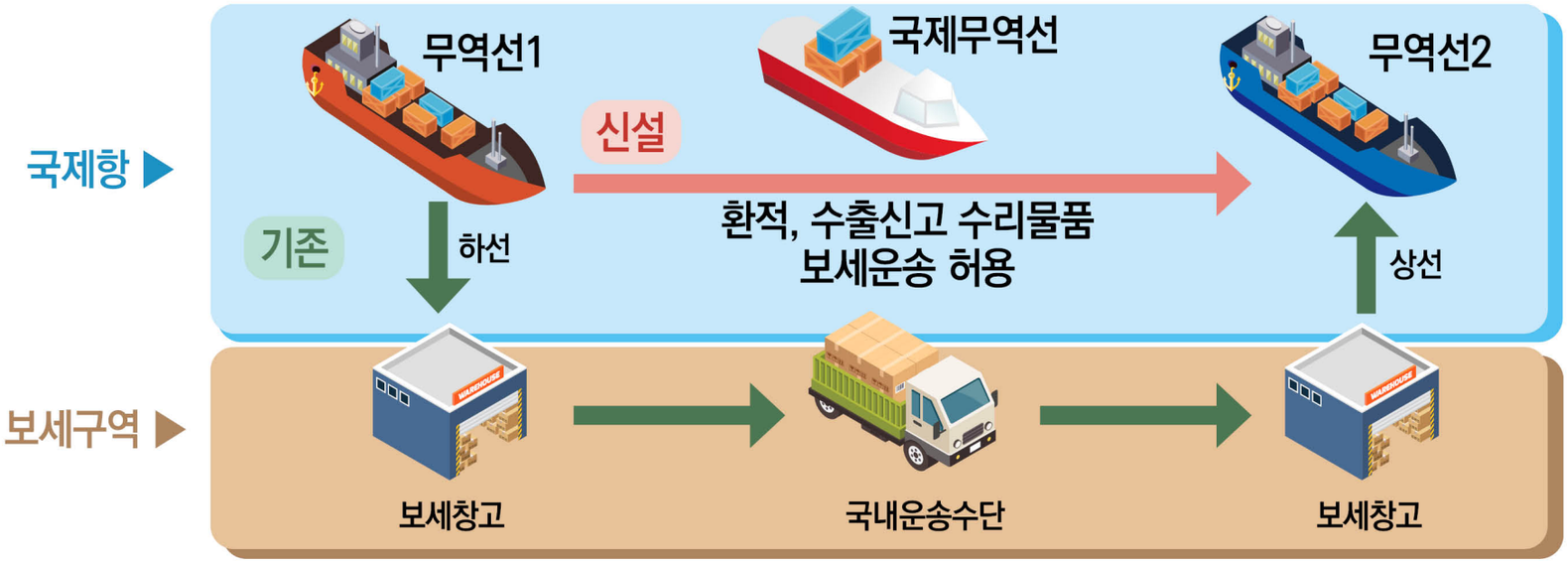

※ **보세운송:** 외국으로부터 수입하는 화물을 **입항지에서 통관하지 아니하고** 세관장에게 신고하거나 승인을 얻어 **외국물품상태 그대로 다른 보세구역으로 운송**하는 것

04 수출입물품 검사수수료 징수 폐지

종 전

□ **세관직원이 검사현장에 출무하여 물품검사 시 수수료* 부과(제247조제3항)**

* 기본수수료(시간당 2천원)+실비상당액

• 부과대상 물품
- 검사장소가 지정장치장이나 세관검사장이 아닌 경우

• 부과제외 대상
- 검사장소가 신고인과 운영인이 다른 보세창고인 경우
- 수출물품

달라지는 내용

□ 〈삭 제〉

기대효과 보세창고를 운영하고 있는 수출입기업의 수수료 부담 완화 및 업무처리 불편 해소

시 행 일 '24. 1. 1. 시행(「관세법」 제247조제3항 개정)

05 재수출면세 대상물품 추가

종 전

□ **재수출면세 대상물품**
- 〈 추 가 〉
- 〈 추 가 〉

달라지는 내용

□ **재수출면세 대상물품 추가**
- 반도체 제조설비와 함께 수입되는 운반용 카트
- 반도체 제조설비의 운송과정에서 해당 설비의 품질을 유지하거나 상태를 측정·기록하기 위해 해당 설비에 부착하는 기기

기대효과 반도체 제조설비 산업의 수출 경쟁력 강화

시 행 일 '24. 1. 1. 시행(「관세법 시행규칙」 제50조 개정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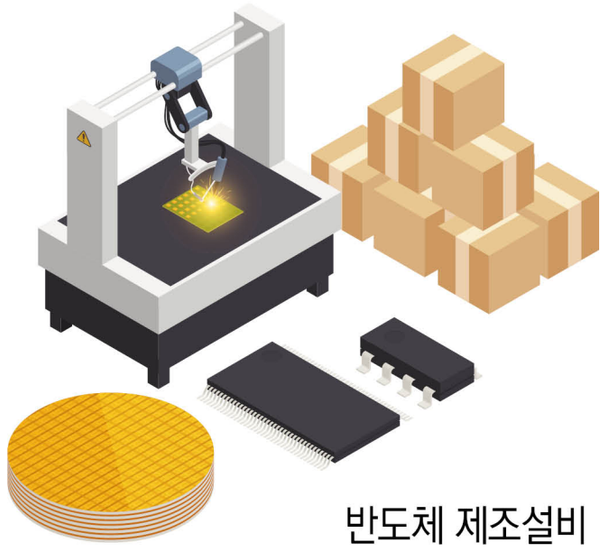

반도체 제조설비

재수출면세 대상물품 추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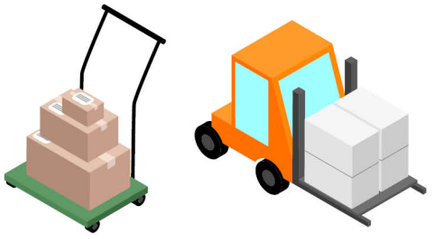

운반용 카트

품질 유지,
상태 측정·기록용
부착기기

06 수정신고 시 관세 과소신고 가산세 감면율 확대

종 전

□ 수정신고 시기별 가산세 감면율(제42조의2제1항)

• 보정기간 경과 후
- 6월 이내 : 20%
- 6월~1년6월 이내 : 10%

달라지는 내용

□ 감면율 상향조정 및 세분화

• 보정기간 경과 후
- 6월 이내 : 30%
- 6월~1년 이내 : 20%
- 1년~1년6월 이내 : 10%

기대효과 관세 과소신고 가산세 감면율을 확대하여 납세자 권익 보호

시 행 일 '24. 1. 1. 시행(「관세법」 제42조의2 개정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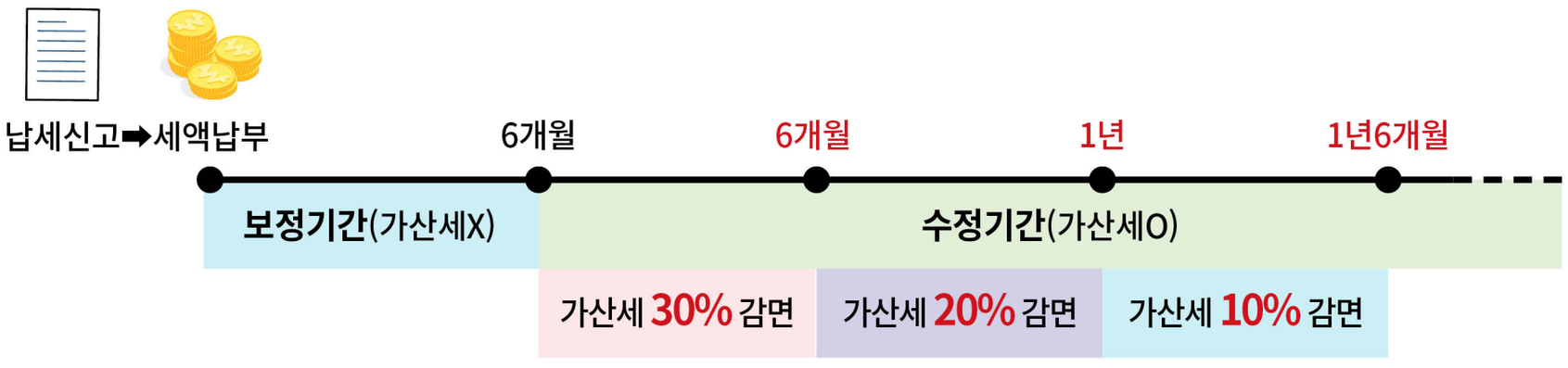

***보정기간이란?**

납세의무자가 신고 납부한 세액이 부족하다는 것을 안 경우
가산세 없이 보정 신청을 할 수 있는 기간으로 관세법에 따라 신고 납부한 날부터 6개월 이내로 규정

07 손실보상 대상 확대

종 전

□ **세관의 물품검사로 물품에 손실이 발생한 경우 보상(제246의2제1항·2항)**

• 수리할 수 없는 경우
- 검사대상 물품:과세가격에 상당하는 금액
-〈신 설〉

•수리할 수 있는 경우: 수리비에 상당하는 금액

달라지는 내용

□ **손실보상 대상을 포장용기, 운반수단 등의 손실로 확대**

• 수리할 수 없는 경우
- (현행과 같음)
- 포장용기·운반수단, 운송수단: 손실을 입은 자가 청구한 금액

• 〈현행과 같음〉

기대효과 손실보상 대상을 확대함에 따라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세관공무원의 적극적인 물품검사를 유도

시 행 일 ’24. 3. 1. 시행 예정(「관세법」 제246조의2제1항 및 제2항 개정)

기존

검사대상물품

확대

포장용기

운송수단

08 여행자 휴대품 별도 면세범위인 향수의 면세한도 상향

종 전

□ **여행자 휴대품 중 별도면세범위인 향수의 면세한도**
- 향수의 면세한도 60ml(밀리미터)

달라지는 내용

□ **별도면세범위인 향수의 면세범위 상향**
- 향수의 면세한도 100ml(밀리미터)

기대효과 ’79년부터 면세한도가 고정되어 있는 향수에 대해 면세한도를 상향하여 국민 편의 증진 및 면세산업 활성화 지원

시 행 일 ’24. 1. 1. 시행(「관세법 시행규칙」 제48조제3항 개정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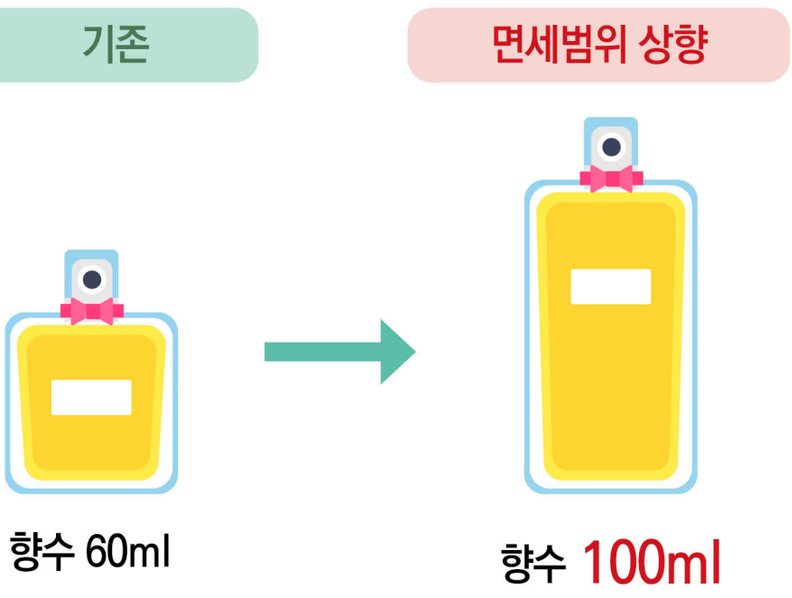

09 사전세액심사 생략대상 확대

종 전

□ **사전세액심사 생략 대상**
- 〈신 설〉

달라지는 내용

□ **사전세액심사 생략 대상 확대**
- 정부(WTO 시장접근물량 적용 양허관세추천기관과 추천대행기관포함), 지방자치단체, AEO*(수입 부문에 한정)가 직접 수입하는 물품

*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(AEO)란 관세청에서 법규준수, 내부통제시스템, 재무건전성, 안전관리의 공인기준의 적정성여부를 심사하여 공인한 우수업체

기대효과 사전세액심사 생략대상 확대로 납세자 편의 증진 및 행정낭비 방지

시 행 일 '23. 12. 27. 시행(「납세업무 처리에 관한 훈령」 개정)

기존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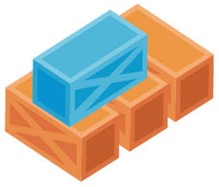

관세·부과세가 없거나
100% 면제되는 물품

\+

확대

정부, 지방자치단체, AEO인증 업체가

직접 수입하는 물품

***사전세액심사란?**

농수산물과 같이 가격변동이 크거나 저가신고 가능성이 큰 물품에 대해 수입신고를 받기 전 관세액을 심사하는 제도

10 유니패스 전담 운영기관 설립

종 전

□ 〈신 설〉

□ 〈신 설〉

□ 〈신 설〉

□ 〈신 설〉

달라지는 내용

□ 『한국관세정보원』의 설립 규정 신설

- 관세정보시스템(유니패스)을 안정적으로 운영·관리하기 위한 전담 공공기관 설립 근거 마련

□ 『한국관세정보원』의 설립 요건

-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득하여 성립한 법인으로서
- 정관은 명칭·목적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, 기타 정관의 변경은 관세청장의 인가사항임을 규정

□ 『한국관세정보원』의 사업범위

- 관세정보시스템(유니패스) 운영·관리, 기술지원센터의 운영 등 『한국관세정보원』의 사업 수행범위를 규정

□ 기타『한국관세정보원』관련 제반 규정

- 출연금 및 관세청장의 업무 지도·감독 권한 근거를 마련

기대효과 특수법인『한국관세정보원』의 설립으로 유니패스 운영의 공공성과 전문성 강화

시 행 일 ’24. 7. 1. 시행 예정(「관세법」 제327조의2 개정)

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 UNI-PASS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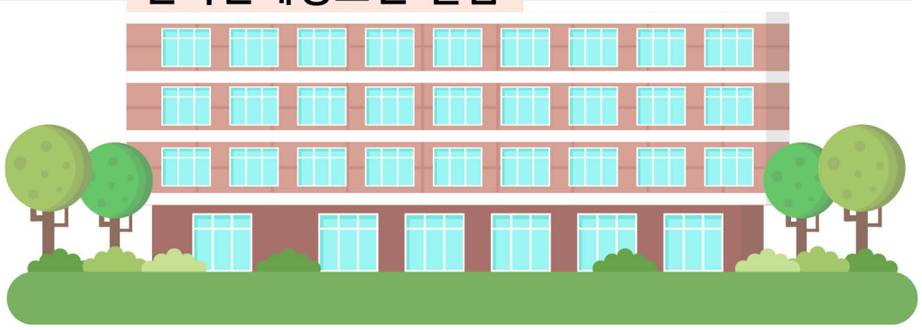
한국관세정보원 설립